

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정 공고

정부조직법 개정(2017. 7. 26.) 시행으로 해양경찰청 출범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범위 중 일부 오류 등으로 관보 규정 제3조(관보편집의 구분과 순서) 및 제12조(게재 의뢰와 게재료) 의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12월 28일

인 천 해 양 경 찰 서

○ 정정(개정)사유

-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경찰청 출범으로 인한 공고권자 변경
- 금지구역 범위 중 일부 단순 오타(④,⑥항목)로 정정

● **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18-34호**

관보 제18763호(2016. 5. 20)에 게재된 "인천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-73호 (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)"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관보내용	정정(개정)사항	비고
인천해양경비안전서	인천해양경찰서장	관보 제18763호(2016. 5. 20.) 94쪽, 위에서 4번째 행
④북위37°18'26.9", 동경126°36'23.0" ⑥북위37°18'11.8", 동경126°36'41.5"	④북위37° 19'13.5" , 동경126°36' 24.5" ⑥북위37° 19'11.8" , 동경126°36'41.5"	관보 제18763호(2016. 5. 20.) 94쪽, 위에서 10번째 행(금지구역 범위) 아래 표 위에서 2번째, 3번째 줄

2018년 12월 28일

인천해양경찰서장

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정정 공고

□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

- 명 칭 : 시화호 조력발전소 앞 해상
- 대 상 : 모든 수상레저기구
- 설정기간 : 연중
- 금지구역 범위

- ①북위37°18'48.0", 동경126°36'27.0", ②북위37°18'52.9", 동경126°36'22.7"
- ③북위37°19'01.2", 동경126°36'25.9", ④북위37°19'13.5", 동경126°36'24.5"
- ⑤북위37°19'17.2", 동경126°36'33.7", ⑥북위37°19'11.8", 동경126°36'41.5"
- ⑦북위37°19'05.1", 동경126°36'46.8", ⑧북위37°18'56.0", 동경126°36'51.6"

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내측 해역

